

중국보험법상 정보제공의무와 시사점

A study on the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in Chinese Insurance Law and the Suggestion

박 은 경*

Park, Eun-Gyoung

목 차

- I. 시작하며
- II. 위험정보의 편재성과 계약당사자의 의무
- III. 중국보험법상 정보제공의무
- IV. 마치며 - 우리 법에의 시사점

국문초록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전가하려는 위험에 대한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정보를 각각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의 편재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및 계약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상호간에 정확한 정보의 획득은 보험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보험계약법은 계약당사자간에 최대선의에 기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많은 국가들은 이들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특히 보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는 수동적인 답변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보험자에게는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독특한 입

논문접수일 : 2010.6.27

심사완료일 : 2010.7.22

제재화정일 : 2010.7.23

* 법학박사 ·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법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개정보험법상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우리 상법 보험편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정보제공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 중국보험법, 보험계약자 보호

I. 시작하며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엄밀하게는 보험청약자)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통해 위험의 전가와 손실의 전보(또는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문제는 이들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체결여부 및 계약조건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보를 각각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서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은폐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계약당사자간 '위험정보의 편재성'¹⁾이라 부른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진실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상으로는 당사자간에 정보의 제공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위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당사자간 정보의 편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를, 보험자에게는 약관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를 부과하고 위반 시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²⁾, 2009년 제기된 보험민원(총 40,936건)은 고지·통지의무위반(1,908 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과 관련하여 보험금의 산정(4,930건) 및 지급(2,355건), 보험자의 면부책결정(3,879건), 장해 및 상해등급의 적용(1,238건), 보험계약의 성립 및 실효(2,506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민원의 대부분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

1) 한창희, 「현대보험법의 동향」,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94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207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체로 동일하다.

2) 금융감독원, "2009년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2010.2.5. 보도자료 참조(www.fss.or.kr).

험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결국 보험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없었거나 혹은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결과, 보험계약자측의 보험서비스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사건 중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약관설명의무위반의 문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규정은 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 시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밖에 없다.

2008년을 전후하여 많은 국가에서 보험계약법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우리 상법개정에 참고가 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어놓고 있다. 특히 독일의 보험계약법 개정, 일본의 보험법 제정, 영국 법률위원회의 보고서 및 중국의 보험법 개정 등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개정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최근 이루어낸 보험법 현대화의 성과 중 보험계약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에 한정하여, 향후 우리 상법 보험편의 개정방향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 위험정보의 편재성과 계약당사자의 의무

1. 보험계약당사자간 정보의 편재성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일정한 금액(보험료)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자(보험계약자)와 자신에게 전가를 회망하는 수많은 동일한 위험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인수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불확정한 사고가 현실화 된 상대방에게 손실을 전보하거나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자(보험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들 계약당사자는 물건의 매매에서와 같은 방법으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위험 또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자신 소유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실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건물의 관리상태나 전기배선 및 기타 화재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자신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보험가입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숨기고자 할 것이고, 그러한 화재위험을 일정한 금액으로 인수한 후 화재로 인한 손실보상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보험청약여부에 불리하게 작용될 사정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계약은 위험에 관한 정보는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상

품에 관한 정보는 보험자 측에 각각 편재되어 있는 계약이라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계약의 성립여부 및 계약의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정보의 교환 내지는 진실한 정보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일정한 불이익의 발생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이다.

보험계약자는 과거의 질병이나 현재의 건강상태 혹은 소유물의 상태 등과 같이 보험자에게 전가할 위험의 종류와 크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보험자는 자신이 개발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담보의 방법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제정자로서 전문적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양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전가요청(청약)을 승낙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조건으로 이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있어서 수지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을 통한 보험가입자간 형평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반면에 보험자가 독점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보험계약자가 전가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여부 및 보장의 크기, 위험발생시 받을 수 있는지 보장의 종류와 보상거절에 대한 이유 등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 할 것이다.

2. 정보편재성 극복을 위한 계약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

가.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의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측)³⁾의 지배 하에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는 두 단계에서 정보우위에 있게 된다. 첫째 단계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정보의 편재로 이때의 정보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을 예측하고, 위험의 인수여부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보험계약자가 이 단계에서 필요한 위험정보를 숨기게되면 보험자는 정확한 보험료산정에 실패하거나 불량위험의 인수로 인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보험자의 손해율이 왜곡되어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지거나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해

3) 위험정보와 관련한 사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특히 인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부보적격체로서의 판단여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고지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이라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단순히 보험계약자로 기술하기로 한다.

치는 결과가 된다. 고지의무와 위험증가의 법리는 이 단계에서의 정보편재성을 시정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정보의 편재이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및 태양 등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가 독점하고 있는 단계로, 이를 방지하게 되면 보험사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금청구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발생, 보험사고로의 위장이나 보험금의 과다청구와 같은 사기적 보험금청구가 유발될 수 있다.⁴⁾ 사고발생통지의무나 손해방지의무, 각종의 협조의무는 이 단계에서의 정보편재성을 시정하여 보험이 사기의 수단이 되어 보험의 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보험계약자가 전가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할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이들 중요한 사항은 예컨대 보험계약자의 의무해태로 인한 불이익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계약의 실효 등 보험사고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각종의 경우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자신이 개발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보험약관에 담아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알고싶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보험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의 우위를 방지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게 된다.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는 보험자의 정보우위를 시정하여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정보제공의무의 최근 동향

가. 의의

4) 한창희, 전계서, 94~95면.

보험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최근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독일(2007), 일본(2008), 영국(2008)⁵⁾, 중국(2009) 등 일련의 국가가 보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험정보의 제공의무와 관련한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보험계약자의 열등한 지위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에 대한 부담은 약화시키면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혹은 상담의무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험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에 이루어진 보험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험계약자보호의 요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동향에서 나타난 보험계약자보호의 요청은 우리 상법의 보험면 개정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나.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의무 동향

고지의무제도의 중대한 변화는 자발적 고지의무(적극적 고지의무)에서 응답적 고지의무(수동적 고지의무)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발적 고지의무의 폐지와 답변의무로의 전환, 고의 이외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비율적 보상제도의 채용, 신중한 보험자기준의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동향이 보편화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전화나 인터넷에 의한 보험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인수절차가 진행되고, 추가적인 사실을 고지할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 의무로 강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⁶⁾ 둘째, 현재의 보험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보험기술의 향상은 보험자가 중요사항에 대해 질문조사할 능력을 제고하였고, 그 결과 보험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과거와 현저히 다른 것이며, 보험자가 조사하면 보험계약자보다 중요사항을 더 잘 파악 할 수도 있고, 질문표를 통해서 중요사항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도 있으며, 보험기술의 발달로 인한 중요사항의 세분화와 전문화의 심화는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에 대한

- 5) 영국의 법률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때를 말한다. 영국법률위원회가 고지의무와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미 50년 전의 일이었지만, 2006년 9월 고지의무의 개정에 대한 초안적 성격을 가지는 보고서(Issues Paper 1)가 발간되었고, 2007년 7월 첫 번째 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한 후,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결과물을 2008년 5월에 발간한 것이다. 보다 자세히는 장덕조, “영국보험법의 개정동향과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65호), 2010, 53면 이하 참조.
- 6) 한창희, “고지의무의 입법적 연혁과 최근동향”,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65호), 2010, 136면.

인식가능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여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자발적 고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된다.⁷⁾

다.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동향

약관설명의무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는 보험자가 약관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 보험계약자에게 상담의무를 부과하거나(독일), 약관의 내용중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설명의무를 강화(중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보험계약법은 제7조의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제6조에서 '청약이 권유된 보험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보험계약자의 인적요소와 상황 등에 대하여 특정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희망이나 필요에 따라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고, 특정의 보험에 대하여 해야 할 조언과 그에 관련한 근거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담 및 조언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보험자가 이 상담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담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와 상담 및 조언의무의 2중적 보호장치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약체결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⁸⁾

III. 중국보험법상 정보제공의무

1. 2009년 중국개정보험법의 국제적 정합성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하 '중국보험법')은 1995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 차례 개정되었다. 보험법 제정이후 2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중국의 보험산업은 팔목활만한 성장을 계속하여, 2005년 말 현재 보험회사 수는 10배 이상, 수입보험료(4,727억 3천만 위안)는 세계 제11위를 차지하고 있다.⁹⁾ 2006년에는 수입보험료가 6,000억 위안대를 돌파하였으며, 중국과 외국보험사 전

7)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비교사법」, 제16권 3호(통권4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337면.

8)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12면.

9) 楊華柏, 積極推動《保險法》修改促進保險業又快又好發展, 「保險研究」, 第8期, 2006. 이 글

부의 자산 합계는 1조8,783억 위안(약 223조 4,4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개혁개방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보험산업은 평균 30%이상의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였으나, 중국보험시장과 보험산업의 감독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어서 2002년의 개정법은 너무나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보험계약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보장과 법률의 평등과 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 보험감독위원회(이하 '보감회')는 2004년 10월말 제2차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2006년 12월 20일까지 개정작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 2차 보험법의 주요개정내용은 ①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문제 ②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③보험가액, 보험금액 및 중복보험 ④보험자산관리공사의 설립과 감독 ⑤보험협회의 설립과 기능 ⑥보험자산의 운용 등에 관한 부분이었다.¹¹⁾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28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총 8장 187개 조문의 중국보험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²⁾ 제2차 개정은 중국보험법의 장과 절에서 개별조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보험계약편의 경우 조문 수는 60개에서 57개로 감소되었지만, 개정조문이 무려 48개에 달하고 있다.

2009년 중국보험법의 주요특징은 당시 유사한 시기에 개정이 이루어진 보험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에 둔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도 신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중국보험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원칙(1)>을 제정하였다.¹³⁾ 이에 의하면 司法解釋의 지도원리는 보험법개정의 대원칙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보호강화에 초점을 두되, 보험계약당사자간의 이익형평도모란 목적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⁴⁾

중국보험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보험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계약자 보호조

은 중국보험감독위원회 법규부주임 양화백이 "海峽兩岸保險法律制度比較研究座談會"에서 강연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 10) 보험일보(<http://www.insura.net>), "中, 올해 수입보험료 6,000억 위안", 2006.12.27.
- 11)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關於對<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修改征求意见>的通知", 2004.11.19.
- 12) <http://money.msn.com.cn/insurance/strategy/88428.shtml>(2010.01.31. 최종방문)
- 13) 사법해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375060&k_title=%EC%A0%95%EB%A8%9C&k_content=%EC%A0%95%EB%A8%9C&k_author=\(2010년%204월%2023일%20최종방문\)](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375060&k_title=%EC%A0%95%EB%A8%9C&k_content=%EC%A0%95%EB%A8%9C&k_author=(2010년%204월%2023일%20최종방문))
- 14) 2009년 중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박은경, "중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시사점", 「중국법연구」, 제13집, 한중법학회, 2010. 06, 137-162면을 참조.

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험편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하에서는 특히 보험계약당사자간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법과 비교고찰하기로 한다.

2.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의무(답변의무)

가. 중국보험법 제16조 - 정보제공의무 규정

개정 중국보험법은 제16조에 고지의무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앞에서 규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보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앞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해제권은 보험자가 해제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¹⁵⁾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제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지만 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이미 고지의무위반을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¹⁶⁾

15) 불가항쟁조항이 적용될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중국법원에 계류중이다. 자세한 것은 張文凌, 新保險法“不可抗辯”第一案開庭 참조.

(

16) 중국 국무원 법제실(2010년 2월 20일 최종방문).

(<http://www.chinalaw.gov.cn/article/fkfd/xfg/fl/200903/20090300129046.shtml.>) 第十六條 訂立保險合同，保險人就保險標的或者被保險人的有關情況提出詢問的，投保人應當如實告知。投保人故意或者因重大過失未履行前款規定的如實告知義務，足以影響保險人決定是否同意承保或者提高保險費率的，保險人有權解除合同。前款規定的合同解除權，自保險人知道有解除事由之日起，超過三十日不行使而消滅。自合同成立之日起超過二年的，保險人不得解除合同；發生保險事故的，保險人應當承擔賠償或者給付保險金的責任。投保人故意不履行如實告知義務的，保

고 규정하였다.

나. 정보제공방법의 전환 - 적극적 고지의무에서 소극적 답변의무로

소위 고지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이다.¹⁷⁾

보험계약은 일종의 사행계약이다. 그래서 보험자는 자신이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혹은 어떤 조건으로(결국은 얼마의 보험료로) 이를 인수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에게 전가하기를 희망하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평가하고 선택해야만 사행성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의 위험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과 비용의 불합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최대선의계약이라고 전제한 후,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이러한 최대선의에 기초하여 보험자가 알아야 할 위험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진실되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금 지급의 거절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고지의무 제도이다. 2002년 중국보험법 제17조에서도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여¹⁸⁾ 2009년 개정법에 반영되었다.

중국보험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위험사정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우리 상법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에게 무엇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 위험을 부과하지 않고, 정보획득의 이익을 얻게 될 보험자측에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질문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신이 질문하지 않

險人對於合同解除前發生的保險事故，不承担賠償或者給付保險金的責任，并不退還保險費。投保人因重大過失未履行如實告知義務，對保險事故的發生有嚴重影響的，保險人對於合同解除前發生的保險事故，不承担賠償或者給付保險金的責任，但應當退還保險費。保險人在合同訂立時已經知道投保人未如實告知的情況的，保險人不得解除合同；發生保險事故的，保險人應當承担賠償或者給付保險金的責任。保險事故是指保險合同約定的保險責任範圍內的事故。

17) 金瑛, 保險活動中的告知義務, <http://www.chinacourt.org/html/article/200309/05/78957.shtml> (2010.04.16. 최종방문): 史衛進, 孫洪濤, 「保險法案例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4, 14面.

18) 曹順明·胡濱, “《中國人民共和國保險法》二次修改的主題”, 「中國金融法治」, 中國金融出版社, 2005, 115~138面.

은 사항이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점차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사항에 대한 판단위험을 전가시켜주고 있는 최근의 세계적 보험법개정 동향에도 합치하는 입법태도이다.

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시의 효과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¹⁹⁾하고 보험료의 반환의무도 없으며, 해제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보상책임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²⁰⁾ 그리고 고지의무위반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은 면하지만, 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지의무위반이 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가에 따라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의무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보험법은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2009년 개정법에서는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해지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불가항쟁'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조항은 장기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미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²¹⁾

19) 우리 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여,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적 효력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민법 제550조) 구별의 실익이 있지만, 상법 제655조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해지에 일부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 법상 보험계약의 해제를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지로 번역한다.

20) 孫莉婷, 論保險告知義務探析, <http://www.studa.net/Insures/090925/1150203-2.html>(2010.04.16. 최종방문).

3.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 약관의 명확설명의무

가. 중국보험법 제17조 - 정보제공의무 규정

중국보험법 제17조에서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2002년 개정전 보험법과 달리 보험약관의 교부의무를 추가하였다. 특히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명확설명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면책약관과 관련된 약관이나 보험증권 등을 제시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약관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매우 무겁게 지우고 있다(제17조).²²⁾

그리고 개정법 제19조에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약관조항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법률에 의하여 누리는 권리를 박탈하는 약관조항은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지만, 무효인 약관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정보제공의 방법 - 약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무 요구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란 법률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그 개념과 내용 및 법률효과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해석하여 줌으로써,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약관의 진실한 의미와 법률효과를 이해하도록 할 책임을 말한다.²³⁾

- 21) 王光輝, 2009年保險法修改情況介紹, http://essay.laweach.com/Essay_18705_1.html, (2009.09.15 최종방문).
- 22) 중국 국무원 법제실(2010년 2월 20일 최종방문).
(<http://www.chinalaw.gov.cn/article/fkdk/xfg/f1/200903/20090300129046.shtml>). 第十七條 : 訂立保險合同，采用保險人提供的格式條款的，保險人向投保人提供的投保單應當附格式條款。保險人應當向投保人說明合同的內容。對保險合同中免除保險人責任的條款，保險人在訂立保險時應當在頭保單，保險單或者其他保險憑證上作出足以引起投保人注意的提示，并對該條款的內容以書面或者口頭形式向投保人做出明確說明：僞作提示或者明確說明的，該條款不產生效力。
- 23) 李子寬, “關於保險人對免責條款明確說明的法律問題深討”, 中外民商法裁判網
(<http://www.zwmscp.com/list.asp?Unid=2701>).

중국보험법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청약 전에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이해를 통해 보험계약의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약관의 교부의무와 일반조항에 대한 약관설명의무와 면책약관에 대한 명확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이행의 정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일반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명확설명”의무를 달리 부과하고 있는 점은 중국보험법의 특이한 점이다. 중국법상 면책약관조항에 대한 명확설명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전 또는 체결 시에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면책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상의 청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외에 면책약관의 개념, 내용 및 그 법률효과 등을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해석해줌으로써 청약자로 하여금 그 면책약관의 진정한 의미와 법률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중국보험법에서 특히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설명’과 ‘명확설명’의 2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무엇일까? 중국의 보험산업은 아직 미성숙 단계로,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지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보험지식을 전파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데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자의 책임면제 즉 담보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고 한다.²⁵⁾ 즉 중국의 보험산업은 비록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체결시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교육을 담당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규정된 것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장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것이란 기대에 있다.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체결의 목적 달성을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면책약관 등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해 알권리를 가지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면책약관의 존재 및 그 개념과 법률효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진실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²⁶⁾ 우리 대법원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

24) 명확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대상 및 위반시의 효과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박은경, “중국보험법상 보험자의 明確說明義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집, 한국법학회, 2007, 208~210면 참조.

25) 2003.12.17. 山東省烟台市中級人民法院民事判決書(2003) 烟民二終第203号.

<http://blog.cnread.net/doc/funonews.asp?id=19610>:
李記華, 孫玉榮, “關於保險人的“說明”及“明確說明”義務”, 2005. 3. 法律教育網
<http://www.chinalawedu.com/news/2005/3/ma27193145803350023952.html>.

26) 張立明, “保險合同特別約定的免責條款未明確說明的無效”, 中國民商法律網

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²⁷⁾고 설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시의 효과 - 약관조항의 무효

보험자가 위에서 설명한 면책약관 등에 대한 명확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다. 여기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당해 약관조항이 다른 약관조항과 함께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아 보험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에 기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피보험자(혹은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보험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후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측을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V. 마치며 - 우리 법에의 시사점

상법 보험편은 1991년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17년간 별다른 입법적 보완없이 시행되어 왔다. 그간 보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2007년 초 정부의 적극적인 발의로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2008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위원회의 기본입장은 보험기업과 보험이용자의 이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화시키는 이른바 중립원칙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다른 법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특히 폭넓은 외국입법례를 분석하여, 그 주요내용을 참고하는 한편 특히 가입자보호와 보험제도의 선의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나,²⁸⁾ 다양한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⁹⁾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10416

27) 대판 1998.11.27. 98다32564.

28) 김성태, “보험법의 개정 방향”,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3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11면.

29) 장덕조,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상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이 글의 주제인 보험계약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개정안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점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내용만이 포함된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 몇 년간 보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영국, 일본 등의 보험법 개정동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보험법이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방법을 적극적인 고지의무에서 수동적인 답변의무로 전환하였다는 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 기타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은 향후 우리 상법의 보험편 개정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1995년 보험법을 제정한 후, 약 25년의 짧은 시간동안 보험산업은 급성장하였지만,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정도는 이러한 성장에 못미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후견적 보호가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난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보험계약자³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장래의 위험에 대한 경제적 안정이란 심리적 이익도 있지만, 결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보험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보험료의 부지급이나 고지의무위반, 면책사유의 종류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나날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진실되게 알려주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부담을 가혹할 정도로 무겁게 지우는 것으로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물론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도 고지의무가 수동적인 답변의무화되고 있다고 보아,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을 청약서 여백에 기재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³¹⁾ 있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87~88면 참조.

30) 이러한 의미에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1) 대판 1996.12.23. 96다2797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30. 선고 91가합54300판결 등이 있다.

정보제공방법을 응답의무로 한정한다는 명시적 법규가 없는 경우에 약관이나 해석만으로 자발적 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³²⁾ 이러한 생각에서 이글에서는 많은 외국의 보험법개정 입법례 중에서 보험계약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뚜렷이 구별되는 특색을 가진 중국보험법을 중심으로 우리 상법조항과 비교고찰하며, 우리 상법 보험편 개정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보험자의 정보제공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로 명시하고,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취소권 행사가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보험자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약관규제법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약관설명의무 위반 시의 효력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방법을 수동적인 답변의무로 변경하고, 답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척기간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도록 단축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자의 질문표 작성에 대한 전문성과 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질문표의 망라적 효력을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한정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아픈데 없느냐?'와 같이 포괄적으로 질문한다면, 보험계약자는 또 다시 어떤 정도까지의 아픈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제한한 취지가 퇴색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답변의무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프랑스 보험법은 이러한 포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도 구체적 질문이 합리적으로 기대되기 어려운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포괄적 질문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³⁾ 이들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한정하는 경우, 보험자의 포괄적 질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혹은 보험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현행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32) 한기정, 전계논문, 341면.

33)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한정할 경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에 관하여는 한기정, 상계논문, 351면 이하 참조.

않아, 학자들간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2008년 정부 개정안에 서는,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⁴⁾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당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보험금액이 자동복원되는 책임보험의 경우 등에 실익이 있을 뿐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계약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현행 상법 제638조의3과 제6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638조의3【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651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①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보험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보험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이필규 · 최병규 · 김은경,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한창희, 「현대보험법의 동향」,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3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0H8A0K8Z0M6Z1V5Z5H5K2L9M6L1V5 (2008년 8월 6일 의안번호 550 제안이유 참조, 2009.11.23. 최종방문).

- 김성태, “보험법의 개정 방향”,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3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 박은경, “중국보험법상 보험자의 명확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집, 한국법학회, 2007.
- 장덕조, “영국보험법의 개정동향과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65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 _____,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상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비교사법」, 제16권 3호(통권4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한창희, “고지의무의 입법적 연혁과 최근동향”,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65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 금융감독원, “2009년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2010.2.5. 보도자료 참조 (www.fss.or.kr).
보험일보(<http://www.insura.net>), “中, 올해 수입보험료 6,000억 위안”, 2006. 12. 2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0H8A0K8Z0M6Z1V5Z5H5K2L9M6L1V5 (2008년 8월 6일 의안번호 550 제안이유 참조. 2009.11.23. 최종방문).

史衛進, 孫洪濤, 「保險法案例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4

曹順明·胡濱, “《中國人民共和國保險法》二次修改的主題”, 「中國金融法治」, 中國金融出版社, 2005

楊華柏, “積極推動《保險法》修改促進保險業又快又好發展”, 「保險研究」, 第8期, 2006
金瑛, 保險活動中的告知義務,

<http://www.chinacourt.org/html/article/200309/05/78957.shtml> (2010.04.16. 최종방문)

王光輝, 2009年保險法修改情況介紹,

http://essay.laweach.com/Essay_18705_1.html, (2009.09.15. 최종방문)

李記華, 孫玉榮, “關於保險人的“說明”及“明確說明”義務”, 2005. 3. 法律教育網,
<http://www.chinalawedu.com/news/2005/3/ma27193145803350023952.html>.

李子寬, “關於保險人對免責條款明確說明的法律問題深討”, 中外民商法裁判網
<http://www.zwmscp.com/list.asp?Unid=2701>

張立明, “保險合同特別約定的免責條款未明確說明的無效”, 中國民商法律網,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10416>

孫莉婷, 論保險告知義務探析,

<http://www.studa.net/Insures/090925/1150203-2.html>(2010.04.16. 최종방문)

張文凌, “新保險法“不可抗辯”第一案開庭” 參조,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377869&k_title=%EC%8A%A4%EB%A0%AC%ED%95%91%EB%8B%8C%EB%8D%BC&k_content=%EC%8A%A4%EB%A0%AC%ED%95%91%EB%8B%8C%EB%8D%BC&k_author=\(2010.4.23.%20%EC%9E%91%F9%20%EB%8F%80%EB%81%90%20%EB%8D%BC\)](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377869&k_title=%EC%8A%A4%EB%A0%AC%ED%95%91%EB%8B%8C%EB%8D%BC&k_content=%EC%8A%A4%EB%A0%AC%ED%95%91%EB%8B%8C%EB%8D%BC&k_author=(2010.4.23.%20%EC%9E%91%F9%20%EB%8F%80%EB%81%90%20%EB%8D%BC))

山東省烟台市中級人民法院民事判決書(2003) 烟民二終第203号, 2003.12.17.

<http://blog.cnread.net/doc/funonews.asp?id=19610>

中國 国무원 법제실(2010.2.20. 최종방문)

<http://www.chinalaw.gov.cn/article/fgkd/xfg/fl/200903/20090300129046.shtml>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關於對<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修改征求意见>的通知”, 2004.11.19.

<http://money.msn.com.cn/insurance/strategy/88428.shtml>(2010.01.31. 최종방문)

[Abstract]

A Study on the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in Chinese Insurance Law and the Suggestion

Park, Eun-Gyoung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yungsung University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important changes in many countries worldwide. The issue concerning the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law hold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se changes. Recently, Chinese Insurance Law have greatly been revised, and it has achieved the moderniz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explanation. The changed system about the duty of disclosure is as follows : The first, China has adopted the duty of passive answer in regard of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The second, it has asked the insurer must be perform his duty of explanation clearly. But, Korean Commercial Law(Part IV) did not be

updated since 1991. 12.31. Specially, Korean system on the duty of disclosure and explanation should be modernized in view of recent development. This work of revision has to be based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paper aims at studying reform of Chinese Insurance law on the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and the writer offers several proposals to Korean Commercial Law(Part IV) reform on the view of policyholder protection.

Key Words :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duty of disclosure, duty of explanation, reform of chinese insurance law, policyholder protection